

# 2020년도 제31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11. 26.(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307호)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767건(안건번호 제2020-158252호~15898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58252호~158980호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767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31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0-30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13쪽의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9쪽 본 위원의 발언 중 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괄 심의’를 ‘보호원의 모니터링을 통한 일괄심의’로 수정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14쪽 본 위원의 언어의 순화를 위해 ‘언어공부를 하려는 사람’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며, 18쪽 불법복제 게시물이 판매되는 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주시기 바람. 해당 부분을 수정한 후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위원, C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오진해 전문위원: 회의록에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고, 발언의 취지를 명확히 수정하여 회의록을 공개하겠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회의록을 수정 후,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전상정

####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tvN’, ‘TV조선’, ‘채널A’, ‘OCN’, ‘일본 TV도쿄’, ‘일본 후지TV’, ‘일본 도쿄 MX’, ‘미국 Netflix’, ‘미국 CWTV’, ‘미국 HBO’, ‘미국 Showtime’, ‘미국 FOX’, ‘이십세기폭스코리아’,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워너브러더스코리아’, ‘오피스픽처스’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위원, B 위원, C 위원: 해당 없음.
- A 위원: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전에, 지난 회 심의에서 불법복제물에 대한 반복침해자에 관한 논의를 했었음.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람.
- 정성희 사무처장: 지난주 반복침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위해 포털과 협의를 하였음. '☆☆☆'와 '☆☆'의 경우, 이메일 계정과 블로그 계정의 분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이런 입장에서 계정정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13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통한 접근제한 조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호원에게 요청을 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임.
- B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반복침해자에 대한 현황을 알 수 없을 것임.
- 정성희 사무처장: 그러함. OSP가 시정권고 불이행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안을 보고 후 보호원에 시정명령을 요청하게 되는 것임. 하지만 현재 시정권고조치에 대해서 OSP는 모두 이행하고 있음. 또한, '☆☆☆'와 '☆☆'과 같은 대형 포털의 경우 약관에 의해 시정권고의 건수가 축적될 경우 자체적으로 접근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B 위원: 저번주 심의안건 중 자막파일을 다루는 OSP의 예로 들면 약 100,000개의 게시물 중 1개의 게시물만 민원을 통해 심의에 회부

됨. 이런 사안들을 보호원 자체적으로 자료화하고, 시정권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포털에 제출하면 포털이 반복침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더욱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생각됨.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민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장성희 사무처장: 자막파일의 경우 게시물 모두 불법복제물이라고 보기 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함.
- B 위원: 그렇다면 보호원의 모니터링을 통해 심의에 회부하면 될 것임.
- 정성희 사무처장: 그러함. 이 부분은 모니터링 담당 팀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음.
- C 위원: 자막뿐만 아니라 블로그 내의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도 수많은 침해 게시물 중에 1건만 심의에 회부되는 사안에 대해 보호원의 적극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임. 포털들의 내부 입장에서 보면, 이용자들의 게시물을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라 할 것임. 최근 OSP의 불법복제 게시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이슈화 되면서 '☆☆☆'는 비난의 대상이 됨. 이런 과정을 통해 '☆☆☆'는 불법복제 게시물에 대한 관리감독에 있어 철저히 이행하게 됨. 위의 내용을 우리나라 '☆☆☆', '☆☆'과 같은 포털에 적용하면 좋을 것임. 불법복제 게시물에 대한 포털의 자체적 접근제한 조치의 경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임. 우리의 저작권 보호 활동에 있어 필요할 경우 언론을 통한 문제제기와 같은 보호원의 적극적인 활동

이 필요할 것임.

- B 위원: 보호원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 업무처리규칙 제21조 보면 침해정도가 중하고 상습성이 인정되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저작권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이는 우리 심의위원회의 권한이자 의무임. 이런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이용하여 소극적 대응보다 적극적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임. 이를 분과위원회 보다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하면 좋을 것임.
- A 위원: '블로그 게시판'이라는 말은 블로그의 'sub directory'를 의미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블로그에 접속하여 게시판을 보여주며) 그러함. 예를 들어 한 블로그를 보여드리겠음.
- B 위원: 불법복제 게시물이 아닌 일반 게시물인 경우에 불법복제물 비중과 게시자의 일반 코멘트의 비중을 분석한 모니터링 자료를 포털에 제시하여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A 위원: 미국의 저작권 보호법안인 DMCA를 살펴보면 'red flag'에 대해 OSP는 직접 관리를 통해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우리나라 법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임. 심각한 반복 침해에 대해 보호원의 URL단위의 시정권고 조치에서 더욱 나아가 저작권 경찰에 수사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임. 이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문제임.

- C 위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조치보다 실질적으로 저작권 생태계를 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임.
- 오진해 전문위원: OSP에 따른 심의·의결에서의 제척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 4와 같은 내용으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로 규정하고 있음. 현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 성격과 해당 규정이 부합하고 있지 않아 보임. 따라서 심의를 진행할 때 OSP의 성격과 제척사유를 살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B 위원: 시정권고 가결하는 경우 OSP에게 통보 공문이 발송되는데, 만약 OSP와의 제척 사유가 있다면 시정권고 의결 당시 가결이 아닌 부결로써 사안을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임.
- 오진해 전문위원: 현재까지 OSP와의 제척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던 이유는 심의안건에 회부된 불법복제물이 심의 대상이고 OSP 자체는 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생각됨. 처분성 인정과도 관련 있을 것임. 불법복제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의결하는 경우 이것이 OSP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판단됨. 그렇기 때문에 OSP에 대한 제척 사유 당사자 고지는 하고 있지 않음.
- 정성희 사무처장: OSP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경우 불법복제물 게시·전송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만 함. 그렇기 때문에 OSP

와의 제척 사유가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OSP와의 제척 사유에 대한 당사자 고지는 하지 않고 있음.

- A 위원: OSP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은 직접 하지 않는지?
- 정성희 사무처장: OSP는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행만 하면 되는 입장임. 시정권고에 따른 OSP의 불이익은 없음.
- B 위원: 지속적인 시정권고로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이 계속 된다면 OSP 이용자의 수는 감소할 것이고 결국 OSP입장에선 불이익이라고 생각함.
- 정성희 사무처장: 그렇다면 OSP는 저작권침해에 대해 면책 받을 수 없게 될 것임. 불법복제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이 OSP의 불이익이라고 한다면 불법복제물을 통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와 같음. OSP는 당연히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임.
- C 위원: '☆☆☆', '☆☆☆', '☆☆' 등 OSP는 이용자들의 콘텐츠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음. 이들은 '플랫폼의 중립성'을 주장함. 하지만 최근에 플랫폼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슈가 논의되고 있음. '플랫폼의 중립성'을 주장하면서도 불법복제 게시물을 방치하면서 큰 'contents pool'을 형성하여 수익을 얻는 양면성을 갖고 있음.
- 정성희 사무처장: 우리 보호원은 불법복제물의 유통 현황을 OSP에 알리고, 불법복제물 삭제 또는 전송중단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함.

OSP가 그것을 이행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OSP에 대해서는 제척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 C 위원: OSP별 시정권고 횟수와 같은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만약 이런 데이터를 공개한다면, OSP가 불법복제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임.
- 정성희 사무처장: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음. OSP는 플랫폼으로써 중립을 표하고 있고, 특정 OSP의 불법복제 유통현황에 대해 알리게 된다면 OSP가 큰 부담을 갖게 됨.
- B 위원: 이해는 함.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과 같은 자료를 공개하여 OSP의 불법복제물 유통현황이 알려진다면, 이용자들의 OSP 이용빈도가 낮아질 것이고 OSP는 부담을 느낄 것임. 이는 곧 OSP의 불이익으로 작용 될 것이고 이런 결과에 따라 OSP에 대한 제척 사유를 고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OSP에 대한 제척사유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판단됨. 전체위원회에 논의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A 위원, C 위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함.
- 오진해 전문위원: “반복 침해자와 관련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개선방안”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하여 전체위원회 논의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0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767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제 52020-158252호~158980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58252호~158980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수는 1,767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출판물,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 '호라이즌 제로 던'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158775호는 게임 '호라이즌 제로 던'임.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 중임. zip파일로 제공함. 2017. 2. 28. 출시되어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22,800에 정식 판매중이고, 최근 스팀을 통하여 PC로 출시되었음. 문명의 폐허를 대자연이 차지한 세계에서 동·식물을 채집, 사냥하고 고도로 진화한 동물형태의 기계들을 사냥하여 용기를 증명하는 3인칭 오픈 월드 액션 RPG임.
  
- B 위원: 해당 불법복제물은 압축파일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분할 압축파일임. 압축해제를 하면 채증자

료와 같이 게임파일이 생성됨.

- B 위원: 해당 안건은 1개의 게시물을 채증한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모니터링 담당 부서에서 채증을 직접 하고 있음.

(방송 '산후조리원'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158914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산후조리원'을 70포인트에 판매 중임. mp4 파일로 제공함. tvN에서 2020. 11. 2. 방영 시작함. 시청률 3.8%로 현재까지 방영중임. 회사에서는 최연소 임원, 병원에서는 최고령 산모 현진이 재난 같은 출산과 조난급 산후조리원 적응기를 거치며 조리원 동기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격정 출산 느와르임.

(음악 '가을밤에 든 생각'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158936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가을밤에 든 생각'을 20포인트에 판매중임. mp3파일로 제공함. 2020. 11. 6. 발매한 미니앨범 잔나비 소곡집 1의 음악을 전부 제공하고 있음. '가을밤에 든 생각', '한 걸음', '그밤 그밤', '늪은 개', '작전명 청-춘!'을 포함하고 있음. 잔나비 최정훈의 지나간 이야기에 대한 변명과 그리움에 관한 노래임.

- A 위원: 모니터링 요원들의 불법복제물 채증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기준은 명확히 마련되어 있으나 전문위원이 정확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움.

- B 위원: 그 기준을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C 위원: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에 AI를 도입하여 객관성이 입증된 모니터링을 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0-158252호~15898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B, C 위원: 안전번호 제2020-158252호~158980호는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58252호~158980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58252호~158980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

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31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31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2. 3.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